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박기열·박진형 의원 외 22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66호

다. 제출일자 : 2016. 6. 10.

라. 회부일자 : 2016. 6. 10.

2. 제안사유

친환경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¹⁾ 대기환경 개선,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

또한 전기자동차는 2015년 한해에만 전세계적으로 55만여대가 보급 되는 등 최근 보급이 급속하게 신장되고 있으나, 국내 총 보급대수는 2015년말 현재 5,712대²⁾에 불과한 실정이며 서울시는 이중 약 20%인 1,195대를 보급하였음

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전기자

1) 내연기관 총괄에너지효율 17%, 전기차총괄에너지효율 37%(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연구소)

2) SNE Reserch(해외) 및 국토교통부 통계누리(국가)

동차 보급의 선결 요건인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효과성 높은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

2016년 1월 『주차장법』 및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』의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,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『주차장법』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(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)
- 나. 『주차장법』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함(안 제23조의3 및 별도4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주차장법」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6. 6.10 ~ 17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) : 동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주차장법」 및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 되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,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관련법 일부개정 현황

「주차장법」

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 ① 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(이하 "경형자동차"라 한다)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(이하 "환경친화적 자동차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. <개정·시행 2016.1.19.>

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 <본조신설 2016.1.27. /시행 2016.4.28.>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'15년 12월말 기준 1,195대로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³⁾가 약 306만대인 점을 고려할 때 보급 수준이 낮을 뿐만

3) '15.12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: 3,056,588대(승용 2,560,154, 승합 141,927, 화물 347,756, 특수 6,742)

아니라 전차 충전기 설치도 미흡한 실정임

※ 참고 : 전기승용차 및 전차 충전기 보급 현황(2015.12월말 기준)

■ 전기승용차 보급 현황(단위 : 대)												
합계	공공부문				민간부문							
	소계	서울시	자치구	공사 공단	소계	나눔카	G밸리	대여 사업	복지 법인	민간 보급	전기 택시	
1,195	211	95	32	84	984	382	30	194	20	307	51	

■ 전차 충전기 보급 현황(단위 : 기)			
- 충전기 설치 장소 : 공영(시·자치구) 주차장 23기, 민간(마트 등) 부설주차장 34기, 완속충전기의 경우 전차 구매자(처) 차고지 설치			
합 계	급 속	완 속	이동형
1,030	57	945	28

-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,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,

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“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%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”⁴⁾하고, 그 동안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충전시에도 주차요금을 부과하던 사항을 “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, 1시간 초과부터는 50%할인”토록 하는 것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- 다만,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현실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·관리함으로써 주차시

4) 총 주차대수의 3%를 적용하면, 시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27개소, 222면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조성 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34개소, 231면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조성

기존 차량 이용자와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해야 하며,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·운영·유지·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

- 한편, 서울시장은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및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‘동의’ 의견⁵⁾을 제출하였음

5) 주차계획과-7800(2016.6.17.)